

이 포스터는 반드시 피고용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

(포스터는 8 1/2" x 11" 표준 문서 크기로 인쇄하십시오)

건강한 일터/건강한 가족법:

캘리포니아 유급병가

(수정에 의한 효력발효: 2024/1/1)

자격:

- 2015년 7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고용된 사람은 유급병가의 자격이 있습니다.
- 유급병가는 30시간 근로 마다 한 시간 씩 적립되며, 피고용인의 정규 급여 요율에 따라 지급됩니다. 적립은 최초 고용일 또는 2015년 7월 1일 가운데 값이 큰 날짜에 시작됩니다. 적립된 유급병가는 다음 고용 연도에 이월해야 하며, 최대 80시간 또는 10일까지 적립됩니다.
- 고용주는 또한 12개월 기간이 개시될 때 5일 또는 40시간 가운데 큰 값의 유급병가를 "사전에"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적립 또는 이월이 의무는 아닙니다.
- PTO 계획을 포함하여, 특정 조건에 알맞은 다른 적립 계획 또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사용:

- 피고용인은 고용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면 유급 병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피고용인이 자신 또는 가족의 현재 건강 상태 혹은 예방 진료를 위한 진단, 간호 또는 치료에 대하여, 혹은 가정폭력, 성적 침해,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인 피고용인이 특정 목적으로,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을 할 경우, 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고용 연도마다 40시간 또는 5일 가운데 많은 쪽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피고용인의 유급 병가 신청 또는 유급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이나 차별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모두 행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피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에게 보복이나 차별을 한 고용주를 노동 감독관에게 고충 제소 할 수 있습니다.

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귀하의 고용주 또는 지역 노동감독관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. 사무실 위치는 저희 웹사이트 <http://www.dir.ca.gov/dlse/DistrictOffices.htm> 에서 시, 지역, 커뮤니티 목록에서 알파벳 순으로 이용하여 찾으세요. 직원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전화 접촉도 가능합니다.